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2025.06.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6.)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5. 8.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서영교의원	2025.07.0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6.)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5. 8.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